



(주)서빅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자료

2023. 09.

본 자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교육의 실시를 위탁 받은 사업자가 집합, 서면 또는 온라인 등에 의한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법정 교육자료입니다.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금융기관을 통해 퇴직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모든 사업장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퇴직금제도 중 1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금제도
퇴직급여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	회사의 부담금 ± 수익(손실)	퇴직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
적립금 운용책임	사용자(회사)	가입자	사용자(회사)
담보대출	법정사유시 50% 内	법정사유시 50% 内	불가
중도인출	불가	법정사유시 100% 内	법정사유시 중간정산 가능
수급형태	- 일시금 - 연금 : IRP로 이전하여 연금 수령	- 일시금 - 연금 : IRP로 이전하여 연금 수령	- 일시금 - 연금 : IRP로 이전하여 연금 수령

※ 연금 수령 시 만 55세 이상이며 5년(또는 10년) 이상 수령해야함(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 후 해당요건을 충족하여 수령 가능)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및 특징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

- 가입자의 퇴직급여가 사전적으로 확정되어있는 제도입니다.
(퇴직시 평균임금×근속연수)
- 사용자(회사)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회사)가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가입자의 계정에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가입자가 이 자금을 운용하고 퇴직시에는 계정에 적립된 금액을 퇴직급여로 수령하는 제도이며, 납입한도* 내에서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 후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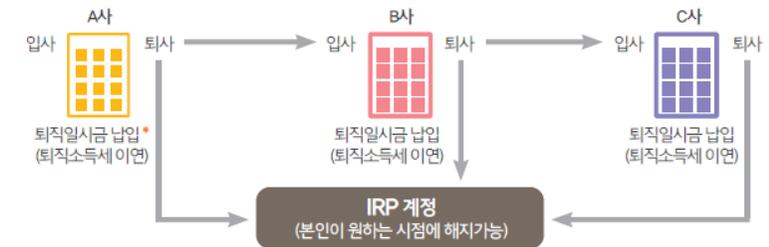
* 연봉 1,200만원에 입사후 3년 뒤 퇴직시 퇴직급여 (임금상승률 10%로 가정)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퇴직일시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일시금 수령 전에도 개인자금의 납입을 위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일시금을 계속 적립하였다가,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일시금 또는 연금(55세 이후)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 퇴직일시금 수령자, 추가납입희망자, 자영업자
- 납입한도* : 연 1,800만원(단, 퇴직일시금은 한도없음)
- * 연간 1,800만원 한도(전 금융기관의 개인형IRP, 연금저축계좌, DC/기업형IRP 개인 부담금 합산)이며, 연간납입액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납입한도와는 별도로 ISA 만기계좌 금액을 연금계좌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가능. 60세 이상자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도 납입가능



※ 기업형 IRP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근로자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설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제도 운영 기본사항

퇴직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확정급여형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에 의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수준이어야 합니다.
- 해당 평균임금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 급여규정 및 단체협약에 의거 정해진 바에 따르고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릅니다.

확정기여형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해당 임금 총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5호에 의거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 지연시 지연이자 납입

확정기여형의 경우 사용자(회사)의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가입자의 운용손실을 보전하고 적기에 납입을 유도하여 가입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납입 지연시 이자를 납입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최초 납입예정일 ~ 14일 이내 : 연 10%, 그 이후 기간 : 연 20%

중도인출, 담보대출 등

근퇴법에 따라 퇴직급여의 중도인출 또는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가입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담보대출 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은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DC/IRP제도에서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임차보증금 부담 시 (DC제도 가입자는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중 1회 限)
- 가입자, 배우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의 경우 (단,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 限)
- 최근 5년 이내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자연재난/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 퇴직급여의 담보대출은 관련법(임금채권법 등)과의 상충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중도인출 시 업무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는 가입자의 중도인출 신청 시 해당 법정사유를 확인하고 각 사유별 필요한 제출 서류 등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2. 사업자는 중도인출 및 향후 퇴직 시의 소득세 세금 계산 등을 설명합니다.
3.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경우 기 운용중인 상품의 매도 처리 등의 내용을 교육

퇴직급여 수령, IRP이전, 제도 폐지·중단

퇴직급여 수령 및 IRP이전 절차

퇴직 급여의 수령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가입자: 퇴직의사표시
2. 가입자가 사용자(회사)에 퇴직급여 청구
3.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개설 안내
4. 사용자(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 급여 지급지시
5. 운용관리기관이 자산관리기관에 급여 지급지시 전달
6. 자산관리기관이 가입자 통장 또는 가입자 지정 퇴직연금사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급여 지급
 - DC가입자가 운용자산의 매각 없이 현재 운용중인 자산의 이전을 원할 경우 동일 금융기관 IRP에 한해 처리 가능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강제이전 예외사유

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근퇴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3.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4.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5.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6.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퇴직연금 계약 이전 절차

1. **규약변경** : 규약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IRP제외)
2. **계약이전 신청** : 새로운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과 각각 계약을 체결합니다.
3. **가입자 정보 및 적립금 이전** :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에는 가입자 정보,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에는 적립금이 이전되도록 해야 합니다.
4.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 새로운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 폐지 및 중단시 업무처리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 기존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폐지란 노사합의로 폐지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제도 폐지 시 사용자 및 사업자의 조치사항

1. 제도 폐지에 대한 근로자 대표의 동의 결과, 적립금 현황, 폐지 사유 및 미납 부담금 처리방안 등을 담은 폐지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미납 부담금 현황, 납입계획, 중간정산 대상기간 등을 가입자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3. 미납 부담금 등을 14일 이내에 납입하고,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중단 시 사용자 및 사업자의 조치사항

1. 제도 중단시 사용자는 중단 사유, 재개 일정, 미납 부담금 처리방안 등을 가입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와 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급여지급, 적립금운용,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 및 가입자교육 등은 계속 수행

*** 기업의 도산 및 폐업 등으로 사용자를 통하여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사업자에게 직접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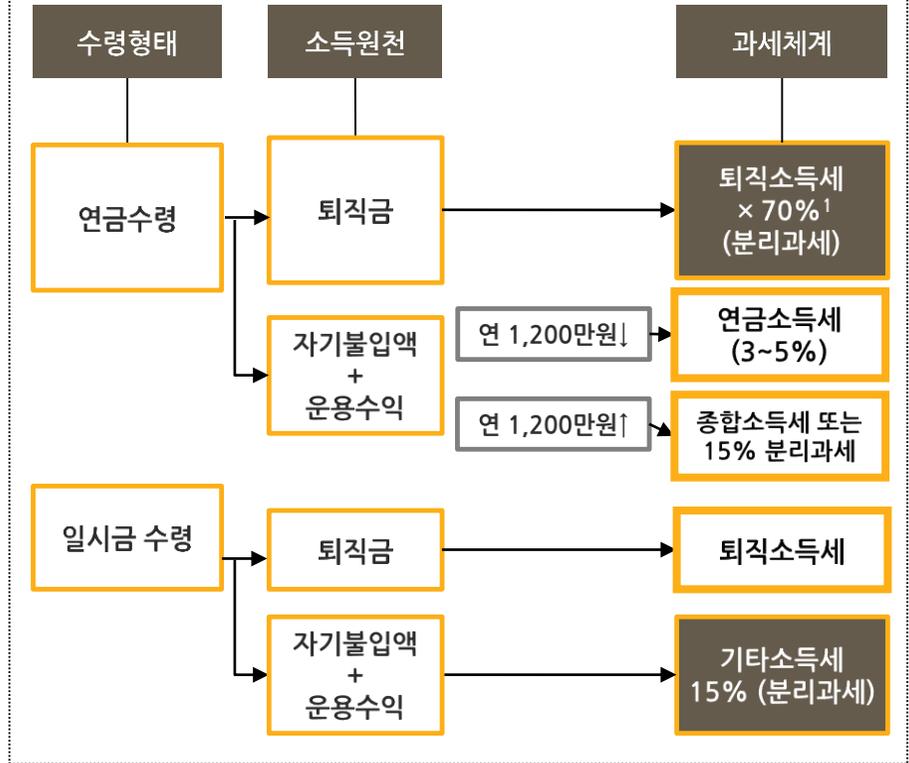
퇴직연금 과세체계

퇴직연금은 사적연금(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연금 외 수령)으로 수령하실 수 있으며, 수령시 각각의 소득원천별로 과세됩니다.

퇴직소득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 시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 적립금 운용단계에서도 운용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구분	퇴직연금	
	퇴직금	개인추가납입분(IRP)
납입금액	근로자의 퇴직금액	추가 납입금액 (연 1,800만원 한도)
납입주체	사용자	가입자
납입시 세제	해당사항 없음	年 900만원 한도 (연금저축포함) 15% ¹ 세액공제
수령형태 및 요건	[일시금] 수령요건 제한 없음 [연금] 만55세 이상 수령 가능, 최소 5년 이상 수령	
수령시 세제	[일시금] 퇴직소득세 [연 금] • 퇴직금 : 퇴직소득세 x 70% ² • 운용수익 (연 1,200만원 ³ 이하시) - 연금소득세 (3 ~ 5%) (연 1,200만원 초과시) - 1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⁴	[일시금] 기타소득세 (15%) [연 금] (연 1,200만원 ³ 이하시) - 연금소득세 (3 ~ 5%) (연 1,200만원 초과시) - 1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⁴

<퇴직연금 수령형태 및 소득원천에 따른 과세체계 정리>



1. 세액공제율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15%, 5,500만원 초과 12%

2. 연금수령연차 10년차까지 70%, 11년차 이상부터 60%

3. '연 1,200만원'은 퇴직금의 운용수익, 개인추가납입분(IRP)및 연금저축을 원천으로 수령하는 연금을 합산하여 비교 (국민연금 및 퇴직금 수령분에 대하여는 미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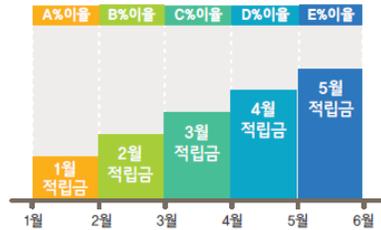
4. 종합소득세율 :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5억 이하 35%, 3억 이하 38%, 5억 이하 40%, 10억 이하 42%, 10억 초과 45%

KB손해보험은 안정성이 뛰어난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리금보장형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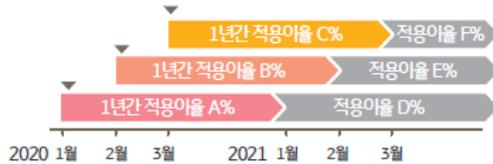
금리연동형

◆매월 1일 결정되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용이율을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전체 적립금에 확정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이율보증형

◆납입시점의 이율보증형 상품 적용이율을 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이율보증기간

-1년형/2년형/3년형(만기시 갱신 가능)

연단위 이율변동형 3년

◆납입시점부터 3년 동안 경과기간별 적용이율을 매년 확정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이율보증기간

-3년(연단위로 금리 변동)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운용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수익자)에게 배분해주는 상품입니다.

구분	주식편입비중	퇴직연금 투자한도
채권형	0%	100%
채권혼합형	40% 미만	
주식혼합형	40% 초과 60% 미만	70%
주식형	60% 이상	

펀드 유형별 환매 시 기준가 적용 및 대금 지급일 예시(퇴직연금 기준)



- 환매 일정은 가입하신 펀드에 따라 다르며, 퇴직연금펀드는 (간이)투자설명서상의 환매 기간보다 1일 더 소요됩니다. 환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의 펀드별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운용, 판매, 신탁, 사무보수 등이 있으며, 재간접펀드의 경우 피투자펀드 보수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 펀드는 일정기간 이전에 환매 시 환매수수료가 있습니다.
- 상기 실적배당형 상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이 아니며 운용성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실적배당형 상품의 기간별 수익률 및 세부사항은 KB손해보험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노후설계의 중요성과 3층보장체계

노후설계의 중요성

기대수명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노후를 자녀에게 기댈 수는 없는 상황에서 노후설계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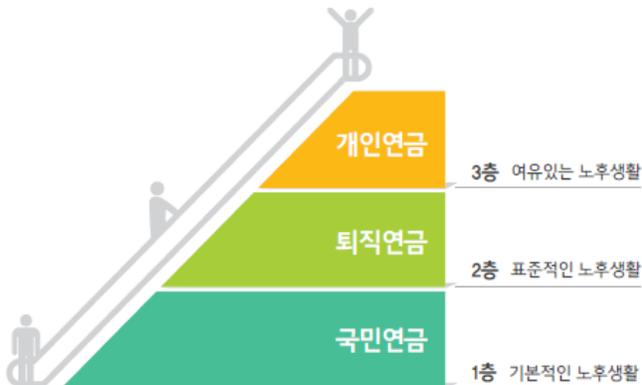
연령대별 생애설계 고려사항 및 자산관리 기준

연령대	발생 이슈	자산관리 방법
20대	졸업, 취직, 결혼	결혼전 월급 최소 60% 이상 저축, 지출관리필요
30대	결혼생활, 출산, 육아	임여소득 준비, 투자 자산 비중 확대로 자산증대
40대	주택확장, 자녀교육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지양, 지출 최소화
50대	자녀결혼, 은퇴	현금 흐름 창출, 은퇴자금 준비, 안전자산 비중확대
60대	노후생활 자금 준비	안전자산 보유, 현금흐름 관리 중요

3층 보장체계의 필요성

우리보다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3층 보장체계를 통해 근로자들의 노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3층 보장체계란 “국가, 기업, 개인”이 운영하는 3단계의 보장을 통해 퇴직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후 필요자금 산출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하여는 다음의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예상소득 (국민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그 외 기타소득)
- 예상소비수준 (기본생활비, 의료비, 여가생활 등)

소득 예시(3층보장)

개인연금

매월 약 48만원

- 매월 30만원 20년 납입
- 20년간 수령시

매월 총연금액 약 296만원

퇴직연금

매월 약 151만원

- 퇴직금 3억, 20년간 수령시
- 이율 2.0% 가정

국민연금

매월 약 97만원

- 표준소득월액 421만원
- 가입기간 30년 기준

소비수준 예시

구분	여유로운 노후생활(月 300~350만원)
기본 생활비	150만원 × 12개월 = 1,800만원
건강검진 / 의료비	건강검진 30만원 × 2인 = 60만원 의료비 34만원 × 12개월 = 408만원
차량유지비	25만원 × 12개월 = 300만원
사회활동비	50만원 × 12개월 = 600만원
여행비	국내·동남아, 2인 = 375만원
골프	골프 50만원 × 12개월 = 600만원

[확정급여형] 표준가입자의 퇴직급여 예상액 및 연금수령액

귀사의 표준적인 급여액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기준일자 : 2023-08-31]

평균근속기간	평균임금(천원)	표준급여액(천원)
4년 6개월	2,336	10,512

- 평균근속기간 : 산출가능일자를 기준으로 사업장 전체 가입자의 근속기간의 합을 전체 가입자 수로 나눈 값
- 평균임금 : 산출가능일자를 기준으로 사업장 전체 가입자의 평균임금의 합을 전체 가입자 수로 나눈 값
- 가입자의 평균임금 :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표준급여액 : 평균근속기간 및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액으로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반영하여 산출

*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의 예상 연금 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전, 적용금리 : 2.80%, 단위:천원)

퇴직금	5년 수령시	10년 수령시	15년 수령시	20년 수령시	25년 수령시
5천만원	887	474	337	269	229
1억원	1,773	948	674	539	459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상황을 안내합니다.

납입연차	납입기간	부담금납부액(백만원)
12년차	2020.01.01 ~ 2020.12.31	1,929
13년차	2021.01.01 ~ 2021.12.31	2,195
14년차	2022.01.01 ~ 2022.12.31	2,412
합계		6,536

- 납입연차 : 부담금 납입상황을 연단위로 표시합니다.
- 납입기간 : 산출기준일 현재 직전 3년 중에서, 당해납입연차에 해당하는 기간(도입기간이 3년 미달인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표시합니다.
- 부담금납입액 : 장래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자원 마련을 위해 부담하는 금액으로 납입된 총액으로 합니다.

적립금 운용현황 및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기준일자 : 2022-12-31)

투자형태	적립금(백만원)
원리금보장형	6,623
합 계	6,623

- 퇴직연금 적립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여 KB손해보험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연금재정 운용을 위해 귀사의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현황에 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안내합니다.

(단위 : 백만원, %)

기준일자	기준책임준비금		최소적립금	적립금액	적립비율
	계속	비계속			
2022-12-31	6,640	6,109	6,640	6,623	99.75%

- 기준일자 : 사업년도 종료일입니다.
- 기준책임준비금 : 사용자가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입니다. Max(계속기준금액, 비계속기준금액)
- 최소적립금
 - 2016.01.01 ~ 2018.12.31 : 80%
 - 2019.01.01 ~ 2021.12.31 : 90%
 - 2022.01.01 ~ : 100%
- 법 제 1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해당 근로기간에 대한 의무적립비율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 적립금액(연금자산)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금액이며 기준일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적립비율 : Max(계속기준금액, 비계속기준금액)에 대한 적립금액의 비율로 합니다.

※ 기타안내사항

-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 1)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미만일 경우 부담금 납입 등을 통해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2) 재정안정화계획서는 부족금액에 대한 자금 조달 방안, 납입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재정검증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재정안정화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 3) 사용자는 재정안정화계획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적립금 초과납입한 경우
 - 1)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가 가능합니다.
 - 2)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반환이 가능합니다.